

건설 기초안전교육, 내년 3월부터 법적 시행된다

내년 3월부터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기초안전교육이 법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가 건설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기초안전교육 이수제로 대체하여 관리토록 개선했다. 건설일용근로자들에 대한 기초안전교육이 개별현장 단위가 아닌 건설업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앞으로 근로자들은 반드시 기초안전교육을 받아야 건설현장에서 근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건설근로자들의 기초안전교육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 산프로그램을 개발, 적극 활용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업종특성상 위험요인이 많아 작업과정에서 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선박 및 보트건조업도 공정 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화학 공정상의 안전과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작업과정상의 안전·보건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그 명칭을 '안전보건보고서'로 변경했다. 여기에 '중대산업사고'의 범위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해당 설비를 가동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직업병이 발생한 경우 역학조사에 대한 비협조 유형을 거부·기피·방해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역학조사에 협조 하지 아니할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밖에 석면조사결과 관련 서류의 기록·보존 의무주체를 건축물 등 철거·해체자로 통일하는 동시에, 석면 조사기관에도 기록·보존 의무를 부과했으며, 우수 안전기계·기구의 제조자 등에 대한 정부지원 대상을 현행 방호장치·보호구 외에 '의무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산업재해가 다발하는 기계·기구'로 확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9월말 공포할 예정이다. 공포되면 6개월 후부터 본격 시행된다.

건설기계로 편입된 타워크레인 관련규정 마련

7월 20일 국토해양부는 건설기계로 편입된 타워크레인과 관련해, 절차 및 규정 등을 마련한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타워크레인이 해체된 경우에는 해체된 기간까지 정기검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타워 마스트·지브 등의 검사기준을 보완하여 안전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신설된 타워정비업 등록기준을 마련하여 타워 정비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했다. 아울러 건설기계 민원신청 시 외국인등록증이 사용될 수 있도록 민원서식 등에 모두 반영키로 했으며, 건설기계등록증을 보완하여 당해 건설기계의 저당권 설정여부를 취득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자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 포상

산재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람을 신고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재보험 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람을 신고하면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포상금은 최저 1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이며 특정 신고자에 대한 누적 지급액은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개정안은 별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11월 2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평균 환산재해율 0.5%…전년보다 0.07%p 증가

지난해 사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업체의 평균 환산재해율이 0.5%로 밝혀졌다. 건설업 환산재해율이란 산업 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사망한 재해자에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해 산정한 재해율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1,000 대 건설업체의 환산재해자 수는 3,983명으로 전년 4,504명에 비해 521명(11.6%) 감소했다. 그러나 재해율은 전년도 0.43%보다 오히려 0.07%p(1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건설근로자 월평균 임금액이 2008년보다 증



가하고, 공사실적액 기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상시근로자수가 크게 감소($\Delta 24.4\%$)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에서 평균 재해율이 하인 건설업체 384개사는 앞으로 1년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때 최대 2점의 가점을 받게 된다. 반면 재해율이 높은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할 때 3~5%의 감액을 받게 되며, 평균재해율을 초과하는 업체는 앞으로 1년간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업체를 1군, 101~300위 업체를 2군, 301~600위 업체를 3군, 601~1,000위 업체를 4군으로 분류하여, 각 군별로 재해율이 상위 10%(267개) 이내인 업체의 시공현장에 대해서는 향후 1년간 지도·점검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재해율이 불량한 하위 10%(100개) 업체는 1년간 각종 지도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건설공사 사전 안전성 심사 강화

앞으로 지상 높이 31m 이상 건축물을 짓는 등의 대형 건설공사현장은 공사착공 전까지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이같은 내용으로 사전안전성 심사가 강화된다고 7월 1일 밝혔다. 사전안전성 심사의 대상은 ▲지상 높이 31m 이상 건축물 ▲연면적 5,000m² 이상 다중이용 시설물 및 냉동·냉장창고 ▲최대지간 50m 이상 교량, 터널, 댐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등이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심사 대상 사업주는 공사착공 전까지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성 심사에 합격해야 착공할 수 있다. 또 심사 후 시공과정에서도 토목공사는 3개월에 1회, 건축공사는 6개월에 1회 이상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사전안전성 심사를 할 때 건설업체 본사 및 발주 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기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심사의 전문성과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고용노동부는 기존 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 지도원(전국 24개소)에서 실시하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도 초대형 공사는 1종 공사로, 그 외는 2종 공사로 분류해 세부적으로 검사하기로 했다. 1종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본부에서 맡게 된다. 참고로 1종 공사에는 ▲지상높이 200m 이상 건축물 및 안공구조물의 건설·개조·해체 ▲최대 지간길이 100m 이상인 교량 건설공사 ▲지하철공사, 해·하저 터널 공사 및 연장 3km 이상 터널 건설공사 ▲깊이 30m 이상 굴착공사 등이 포함된다.

무더위 대비 산재예방활동 강화

노동부가 열사병 예방 등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전국 사업장에 배포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6~9월 중 실시하는 각종 사업장 점검 시에는 폭염에 취약한 고열작업장(제철·주물업·유리가공업), 옥외사업장

(조선·건설·항만하역업 등)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고열작업은 냉방,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 적정 휴식조치, 소금과 음료수 공급 등을 중점 확인한다. 아울러 건설현장 등 옥외사업장의 경우 가장 무더운 시간대(13:00~15:00)에 휴식을 유도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를 운영하도록 시·군·구 등 자치단체와 함께 지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장 행동요령’에 따르면 폭염주의보 발령 시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이 자유복장으로 출근·근무하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휴식시간은 짧게 자주 가지도록 하며 △작업 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물(염분)을 섭취할 것을 권장해야 한다. 또한 폭염경보 시에는 낮잠시간을 한 시적으로 운영하고, 기온이 최고조에 이르는 오후 시간대에는 되도록 실외 작업을 중지토록 해야 한다. 노동부 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한 여름철에는 고온에 의한 건강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라며 “사업장에서는 최고기온에 이르는 12~16시 사이에는 작업시간 및 작업량을 조절하는 등 근로자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참고로 일최고기온 33°C 이상, 일최고열지수(Heat Index) 32°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는 폭염주의보가, 일최고기온 35°C 이상, 일최고 열지수 41°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는 폭염경보가 각각 발령된다.

건물관리업 종사자 재해예방 집중 지원

건물관리업 종사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집중 지원이 실시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물관리업에서 발생하는 재해예방을 위해 관련사업장에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산업재해통계에 따르면, 서비스업의 경우 올해 5월까지 14,007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이 중 건물관리업에서 1,953명의 재해자가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1,593명)과 비교해 360명의 재해자가 증가하면서, 서비스업종 중에서 증가세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단은 ‘산업재해감소 100일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건물관리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9월 14일까지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3,500개소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등의 기술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향후 이번 지원사업에 대한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는 등 건물관리업의 재해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또한 이 사업의 성과를 내년도 직능단체와의 협력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